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5,146,357	14,554,391
일반회계	468,480,261	14,054,408
특별회계	16,666,096	499,983
기타특별회계	16,666,096	499,983
상수도	11,920,228	357,607
의료보호사업	1,934,944	58,048
기초생활보장기금	959,502	28,785
주민소득지원기금	412,508	12,375
묘포장	57,319	1,720
주택사업	166,606	4,998
기반조성사업	8,587	258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1,043,112	31,293
공유임야관리	163,290	4,89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22,74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